

### ■ 신청기간 및 장소 등

• 신청기간 : 2014. 10. 20.~11. 30.(40일)

※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기질비료 정부지원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• 신청장소 :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

- 농지가 여러 시·군·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·군·구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에 신청

- 농지가 같은 시·군·구내의 2개 이상 읍·면·동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에 신청

※ 신청서 작성 시 유기질비료 자부담 비용을 납부할 농협(지점, 지소, 경제사업장포함)을 반드시 지정

• 공급시기 : 2015. 1월 중순 ~12월 말

※ 신청서에 기재한 공급 희망시기(월)에 배송

### ■ 제출서류

•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: 읍·면·동에 비치

■ 신청자격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(경영체 등록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)

### ■ 지원대상(비료의 종류)

•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·혼합유기질·유기복합비료

• 부숙유기질비료(2종) : 가축분퇴비·퇴비

### ■ 지원혜택(보조금 지원금액)

구분	유기질비료 (20kg/포)	가축분퇴비·퇴비(20kg/포)		
		특등급	1등급	2등급
국고(정부보조금)	1,400원	1,300원	1,000원	700원
지방비	600원	600원	600원	600원
계	2,000원	1,900원	1,600원	1,300원

### ■ 기타 참고사항

• 매년 사업을 신청해야하는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“다년 일괄 신청제” 도입

※ 공급 희망 기간(1년, 3년, 5년)만큼 일괄 신청 가능

• 농업인별 공급량 결정 이전이라도 신청량 우선 공급 후 사후 정산  
(국고지원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은 전액 자부담)

• 경영체가 사용하는 지원대상 비종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신청량 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